

2021년 솔루스첨단소재(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2021.01.01~2021.12.31)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솔루스첨단소재
Solus Advanced Materials

목 차

I. 개 요	3
II. 기업지배구조현황	4
1. 기업지배구조 정책	4
2. 주주	6
(핵심원칙1) 주주의 권리	6
(핵심원칙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5
3. 이사회	21
(핵심원칙3) 이사회 기능	21
(핵심원칙4) 이사회 구성	24
(핵심원칙5) 사외이사의 책임	31
(핵심원칙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34
(핵심원칙7) 이사회 운영	35
(핵심원칙8) 이사회 내 위원회	40
4. 감사기구	43
(핵심원칙9) 내부감사기구	43
(핵심원칙10) 외부감사인	49
5. 기타 주요 사항	52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53



I	개 요
----------	------------

▶ **기업명** :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

▶ **작성 담당자**

(정)	김재훈 대리	경영지원실 IR/PR팀	02-3675-5309	jaehoon.kim@solusam.com
(부)	허수인 차장	경영지원실 IR/PR팀	02-3675-5309	suin.heo@solusam.com

▶ **작성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공시대상기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2021.01.01~2021.12.31 이며,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 '공시서류제출일' 및 '보고서제출일'은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최초 공시일입니다.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스카이레이크 롱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1 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¹⁾	41.06%
		소액주주 지분율²⁾	44.21%
업종 (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동박, 전지박, OLED소재 및 바이오소재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 매출액	3,812	2,902	700
연결 영업이익	20	304	102
연결 계속사업이익	2	(110)	45
연결 당기순이익	2	(110)	45
연결 자산총액	10,116	8,412	4,942
별도 자산총액	2,481	2,652	1,758

1) 2021.12.31 기준이며, 우선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 기준입니다.

2) 2021.12.31 기준이며, 소액주주는 우선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가.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소재와 혁신적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기업경영의 근간인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경영의 투명성,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회사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사회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등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법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사업/재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구성원에게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양질의 논의와 최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으며, 본 위원회들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검토하며 이와 더불어 법적인 결격사유, 회사, 대주주 및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s://www.solusadvancedmaterials.com/kr>)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특징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8명 중 사외이사는 3명으로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이사 총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다양한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2개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두 위원회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위원회 독립성도 확보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경영진의 업무와 회계 내역 감사, 내부통제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그 밖에 컴플라이언스 등 비재무 리스크에 관한 감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하여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 명문화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회계분야 (황인이 사외이사), 에너지/소재분야 (최태현 사외이사) 및 금융분야(박상훈 사외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회계 전문가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함으로써 회계 및 업무감사 등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 현황 (2022.05.30 기준)**

내부기관	구성	의장(위원장)	주요역할
이사회	이사 총 8명 (사외이사 3명)	진대제 (사내이사)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결의 등
감사위원회	위원 총 3명 (사외이사 3명)	황인이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 3명 (사외이사 3명)	박상훈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 자격심사, 이사회 추천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위한 필요한 기타사항 등



2. 주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분할 후 현재까지 당사는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와 총 3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전 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 이상 주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2.03.30 개최)에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1-①-1] 주주총회 개최 내역 (기준일: 2019.10.01~2022.05.30)

구분	제3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03.08	2021.12.09	2021.07.21
소집공고일	2022.03.08	2022.01.05	2021.08.12
주주총회개최일	2022.03.30	2022.01.20	2021.08.31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22일전	주총 15일전	주총 19일전
개최장소/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호텔(본점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주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DART 및 KIND 전자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 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8명 중 2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 원 출석여부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내용	1) 발언주주:	1) 발언주주:



	5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1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2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	---

구분	제2기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1.03.11	2020.10.30	2020.03.03	
소집공고일	2021.03.11	2020.11.05	2020.03.10	
주주총회개최일	2021.03.26	2020.11.20	2020.03.25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15일전	주총 15일전	주총 15일전	
개최장소/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호텔(본점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DART 및 KIND 전자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7명 중 3명 출석	6명 중 3명 출석	6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 원 출석여부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내용	1) 발언주주: 3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1) 발언주주: 3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1) 발언주주: 2인(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나.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하여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기간을 가지고자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3기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일 22일전에 소집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권고 사항인 '주주총회일 4주 전 소집공고 통지'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주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하여 의안의 최종 확정 및 연결 감사보고서에 준하는 재무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가 확정되는 시점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집통지 기한을 준수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



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사항

(i)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 여부

당사의 경우 2019년 10월 1일 분할이후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하였으며,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한 나머지 정기주주총회는 연결대상 자회사 및 종속회사들의 외부감사 등의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공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표1-②-1] 주주총회 개최 내역 (기준일: 2019.10.01~2022.05.30)

구분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2년 개최)	제2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개최)	제1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개최)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03.25 2022.03.30 2022.03.31	2021.03.26 2021.03.30 2021.03.31	2020.03.13 2020.03.20 2020.03.26 2020.03.27
정기주주총회일	2022.03.30	2021.03.26	2020.03.25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아니오	아니오	예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예	예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ii)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상법 제368조의3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1기 및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주주들의 저조한 서면투표제 참석율 등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서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영향 장기화 등으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를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제1기 및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주주참여 제고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비율 등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1-②-2]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내역 (기준일: 2021.01.01~2022.05.30)

정기		제2기 주주총회			2021. 03. 26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9,595,086	22,275,792	21,766,610 (97.71%)
						509,182 (2.29%)
제2호 의안	보통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영민)	가결	39,595,086	22,275,792	22,195,476 (99.64%)
						80,316 (0.36%)
제3호 의안	특별	정관 변경의 건	가결	39,595,086	22,275,792	21,203,812 (95.19%)
						1,071,980 (4.81%)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9,595,086	22,275,792	21,662,337 (97.25%)
						613,455 (2.75%)
제5호 의안	보통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39,595,086	22,275,792	22,164,879 (99.50%)
						110,913 (0.50%)
제6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서광벽)	가결	39,595,086	22,275,792	21,004,484 (94.29%)
						65,806 (5.71%)

임시		임시 주주총회			2021. 08. 31	
----	--	---------	--	--	--------------	--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특별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39,595,086	21,825,275	20,437,871 (93.64%)



						1,387,404 (6.36%)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30,584,712	19,328,826	17,941,422 (92.82%)
						1,387,404 (7.18%)

임시	임시 주주총회	2022. 01. 20
----	---------	--------------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30,584,712	20,021,909	18,927,162 (94.53%)
						1,094,747 (5.47%)

정기	제3기 주주총회	2022. 03. 30
----	----------	--------------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주식수(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0,584,712	21,405,581	21,120,521 (98.67%)
						285,060 (1.33%)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30,584,712	21,405,581	21,399,140 (99.97%)
						6,441 (0.03%)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최태현)	가결	30,584,712	21,405,581	21,351,022 (99.75%)
						54,559 (0.25%)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최태현)	가결	14,336,283	5,157,152	5,142,332 (99.71%)
						14,820 (0.29%)



제5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황인아)	가결	14,336,283	5,157,152	4,595,979 (89.12%)
						561,173 (10.88%)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0,584,712	21,405,581	19,176,588 (89.59%)
						2,228,993 (10.41%)
제7호 의안	특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30,584,712	21,405,581	20,922,349 (97.74%)
						483,232 (2.26%)

※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서면투표제 폐지이후, 전자투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 등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향상 및 참석 편의 도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 관련 사항

(i) 주주제안 절차 안내 여부

주주제안권은 일반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ii) 주주가 제안한 의안 처리 내부기준 및 절차

당사는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닌 경우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지체없이 보고되며, 그 사항이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논의 될 수 있게 됩니다.

(iii)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습니다.



[표1-③-1] 주주제안권 행사 내역 및 현황 (기준일: 2020.01.01~2022.05.30)

제안일자	제안주체	주요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반대율(%)
-	-	-	-	-	-	-

(iv)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주요내용 및 처리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당사가 수령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표1-③-2]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기준일: 2020.01.01~2022.05.30)

발송일자	주체	주요내용	회신일자	회신 주요내용
-	-	-	-	-

나. 주주제안권 행사의 용이성

상기와 같이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안내는 없으나,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로 인한 검토사항 발생시 이사회 상정 및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주주제안 절차 안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사항

(i)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배당을 회사가 거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으로써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계산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당사의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당사의 실적, 배당수익률 및 배당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바탕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지,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정관은 이익 배당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 된것으로 본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5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9조의 전환주식, 제10조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이익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사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당사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배당이 확정되는 경우 배당 관련 정보를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 당일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 등과 관련된 주주환원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주들에게 안내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주주환원정책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익배당 등과 관련된 주주환원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당금, 배당수익률(%)에 대한 내용 또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향후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 관련 부분을 보완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에 대한 사항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하기표와 같습니다.

[표1-⑤-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단위: 주, 원, %)

사업 연도	결산 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¹⁾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²⁾	배당성향 ³⁾	
							연결기준	별도기준
2021년	12월	보통주	-	100	3,058,471,200	0.12	2,561.38	32.53
		1우선주	-	101	743,837,528	0.47		
		2우선주	-	100	164,564,600	0.36		
2020년	12월	보통주	-	10	305,847,120	0.02	-	1.01
		1우선주	-	11	81,012,008	0.07		
		2우선주	-	12	19,747,752	0.04		
2019년	12월	보통주	-	-	-	-	-	-
		1우선주	-	-	-	-		
		2우선주	-	-	-	-		

1) 1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2)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금총액 / 연결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i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나.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2021년도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보통주 기준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 인상하였습니다. 배당 수준은 이사회 결의 당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년대비 배당금 증액 등을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



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주환원 방안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현황

(i) 발행가능 주식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

당사 정관에 의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1주의 금액: 100원)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45,455,764주입니다. 이 중 기명식 보통주식은 35,111,195주, 기명식 우선주식은 10,344,569주입니다.

[표2-①-1] 주식발행 현황

(단위: 주, %)

구분		발행가능주식수 ¹⁾	발행주식수 ²⁾	발행비율 ³⁾	비고
보통주		400,000,000	35,111,195	11.364	-
종류주	1우선주 (솔루스첨단소재1우)		8,455,219		-
	2우선주 (솔루스첨단소재2우B)		1,889,350		-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3)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ii)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등

상법 제369조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당사 보통주식 소유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당사의 종류주식은 우선주식이며, 1우선주(솔루스첨단소재1우) 및 2우선주(솔루스첨단소재2우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며, 2우선주의 경우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 2% 배당하며,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은 없으나,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실시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나. 보유주식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여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보통주식 소유주주는 공평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우선주식에는 부여된 의결권이 없으나, 보통주식보다 배당률이 더 높으며,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으로써, 당사 전 주주에게 보유주식의 종류 및



그 보유주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 전반

(i) 주요IR활동, 컨퍼런스 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

당사는 매년 분기별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를 (4분기의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로 대체 가능)통해 실적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발표 공시일 당일에 국문 및 영문 IR Book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여 시장에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적발표 직후에는 국내/외 다양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NDR)을 진행하며, 분기 말 이후 실적발표전까지 일정 기간 IR 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정보 제공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IR 미팅 개최 시 '기업설명회(IR)개최 (안내공시)'를 통해 IR 미팅 개최 전 시장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활동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2-①-2]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비고
2021.02.17~18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4Q 경영실적 리뷰 및 Q&A	-
2021.04.05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 콜	한국투자증권 Group Spot call	-
2021.04.22	증권사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One-on-one)	'21.1Q 연결제무재표기준 영업(잠정)실적	-
2021.04.23, 26	국내 기관투자자	NDR	'21.1Q 경영실적 리뷰 및 Q&A	-
2021.05.12	국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Merrill Lynch Global EV/EV Battery Virtual Conference	-
2021.05.20~21	국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Citi Tech Conference 2021	-
2021.05.27	국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Citi EV Bettery Day	-
2021.07.28	증권사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21.2Q 연결제무재표기준 영업(잠정)실적	-
2021.09.03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2021 Citi Korea Conference	-
2021.11.12	국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21.3Q 연결제무재표기준 영업(잠정)실적	-
2021.11.12	증권사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One-on-one)	'21.3Q 경영실적 리뷰 및 Q&A	-
2021.11.30	증권사 애널리스트	오프라인 기업설명회	전자소재 사업 중장기 전략 및 Q&A	-
2021.12.02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UBS Korea Virtual Corporate Day 2021	-
2021.12.16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유진 온라인 Corporate Day	-
2022.02.09	국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실적발표(연결제무재표기준 영업(잠정)실적)_'21.4Q	-
2022.02.10~11,14	국내 기관 투자자	NDR	'21.4Q 경영실적 리뷰 및 Q&A	-
2022.02.15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Morgan Stanley Corporate Day	-
2022.03.02	국내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유상증자 설명 및 Q&A	-
2022.04.20	국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22.1Q 연결제무재표기준 영업(잠정)실적	-



2022.04.22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온라인 Corporate Day	-
2022.04.25~26	국내 기관 투자자	NDR	'22.1Q 경영실적 리뷰 및 Q&A	-
2022.04.28	국내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	ACC 공급계약 체결 설명 및 Q&A	-
2022.05.24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 콜	BNK 투자증권 그룹 컨퍼런스 콜	-

※ NDR(Non-Deal Roadshow):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목적의 투자 설명회

(ii) 회사 홈페이지 내 IR 정보 공개 현황

당사 홈페이지 내 IR 정보 공개 현황 앞에 명시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한 IR 활동 외에도 당사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및 한국거래소 KIND 시스템 등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분기별 실적 상세자료 등을 통해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주요기능 및 구성 현황 등의 정보와 당사가 기 공시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IR 관련 질의 또는 건의 사항 등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의 "Contact us" 메뉴를 통해 IR 담당자와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IR 담당의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공시 자료에 기재된 번호를 통해 IR 담당자와 유선 연락 또한 가능합니다.

(iii)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 여부 및 영문공시 내역

당사의 국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영문 홈페이지 상에서도 IR 담당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 및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분기별 IR Book도 영문본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현재 별도의 영문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외 증권사 주최 컨퍼런스 참석 및 온라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해외 주주들과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활용한 영문 공시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표2-①-3]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영문)	주요 내용(한글)
-	-	-

(iv) 공정공시 내역

당사가 2021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KIND)을 이용하여 제출한 공정공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2-①-4]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2.08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2021년도 전망 매출액, 전망 영업이익의 안내
2021.04.22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8.03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11.12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년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2.02.09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2022년도 전망 매출액, 전망 영업이익 안내
2022.04.21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2년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v)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당사는 현재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은 바 없습니다.

[표2-①-5]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별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적극적인 IR 활동과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IR Book 국문 및 영문본 게재, 공정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활용한 영문 공시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를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0조를 통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5% 이상이거나, 단일거래규모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1%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주요주주와 주요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ii)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관련 포괄적 이사회 의결 유무, 그 내용 및 사유

또한 당사는 2022년 4월 21일에 개최한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의 국내 및 해외종속회사 (솔루스 바이오텍 주식회사, Volta Energy Solutions Hungary Kft., Volta Energy Solutions Canada Inc.) 총 3개사에 대한 2022년도 연간 예상 채무보증 금액에 대하여 포괄적 이사회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일 당일 금융감독원(DART) 및 한국거래소(KIND)시스템을 통하여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였으며, 공시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목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2022년도 채무보증 포괄승인
-----------	-----------------------------------



주요내용	<p>당사는 2022.04.21에 개최한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의 국내 및 해외종속회사(솔루스바이오텍 주식회사, Volta Energy Solutions Hungary Kft., Volta Energy Solutions Canada Inc.) 총 3개사에 대한 2022년도에 예상되는 연간 총 채무보증금액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채무보증 금액: 합계 6,827억 1천만원 * 개별 채무보증에 관한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승인한 범위를 중대하게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이사회결의일	2022.04.21
기타 사항	<p>본 공시는 당사의 국내 및 해외종속회사(솔루스바이오텍 주식회사, Volta Energy Solutions Hungary Kft.(이하 'VESH'), Volta Energy Solutions Canada Inc.(이하 'VESC')) 총 3개사에 대한 2022년도에 예상되는 연간 총 채무보증금액을 2022.04.2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함에 따른 공시입니다.</p> <p>상기 '주요내용' 중 '총 채무보증 금액'은 2022년 한 해 동안 당사가 총 3개 종속회사에 대하여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보증(기존 보증의 갱신(연장) 또는 신규 지급보증, 이행보증 등)의 연간 합계액입니다.</p> <p>당사는 향후 상기 '주요내용'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기 3사 (솔루스바이오텍 주식회사, VESH, VESC)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실행할 예정이며, 솔루스바이오텍 주식회사, VESH 및 VESC에 대한 개별 채무보증 금액이 당사 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개별 건에 대하여는 그 결정시점(대표이사 승인 또는 필요 시 추가 이사회 승인)에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p> <p>상기 '주요내용' 중 '총 채무보증 금액'은 '22.03.31 하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210.80원/1USD, 1,351.13원/1EUR)을 적용한 금액이며, 향후 적용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iii)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지배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내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서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21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영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종속회사의 금융기관 여신에 대해 모회사로서의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금전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관련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회사명 (채무자)	회사 와의 관계	자금 사용목적	거래목적	채권자	채무금액 (백만원)	채무인수 조건등 기타	비고
Volta Energy Solutions Hungary Kft.	해외 종속 회사	시설/ 운영자금	시설/운영자금 대여	솔루스첨단소재(주)	48,048	금전대여	대여연장
			해외종속회사	한국수출입은행	36,795	채무보증	-
			여신확보시	ING Bank N.V	26,835	채무보증	-



Volta Energy Solutions Europe Kft.			신용보강	SGI서울보증	10,035	채무보증	보증금액 감액
------------------------------------	--	--	------	---------	--------	------	------------

또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상장회사 공시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부분은 이사회 결의 당일 금융감독원(DART) 및 한국거래소(KIND)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을 명문화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항 발생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감독원(DART)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해진 공시사항 이행 이외에 관련 IR활동 강화, 소액주주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내역 및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과 현황 및 향후 계획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1년 7월 21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솔루스바이오텍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시는 이사회 결의 당일 2021년 7월 21일 금융감독원(DART) 시스템을 통하여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및 '합병등 종료보고서(분할)' 공시를 실시하였고, 동 사항을 사업보고서에도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라. 합병 등의 사후정보'에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시 주요 내용은 당사가 기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공시일: 2021.07.21), '합병등종료보고서(분할)' (공시일: 2021.10.01) 및 제3기 '사업보고서' (공시일: 2022.03.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 발생시 관련 IR활동 강화, 소액주주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3.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등 관련사항 전반에 관한 내용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솔루스첨단소재 이사회는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율 약 38%) 이사회는 경영전략, 경영계획 및 신규사업 등 중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 등 회사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하기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주식의 소각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 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이사회 규정의 개정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국내외 지점·법인(당사가 최대주주이거나 1인 주주인 법인)의 설치, 이전, 폐지 및 철수. 단, (1) 지점을 제외한 국내외 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폐지 (2) 해외지점의 동일 국내에서의 이전 (3)프로젝트용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철수에 대해서는 부의대상에서 제외함.
- 사채의 모집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의 10%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자본금의 10%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관계회사 주식(자사주포함) 매각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써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
- 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타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회사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사항 존재 여부, 주요내용 및 효과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주요사항은 하기와 같으며, 향후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사안에 대하여 회사와 주주이익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승인 사항	내용 및 효과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을 이사회에서 승인 받음으로써 보다 심도있고 정확한 경영 방향성 설정이 가능 함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사회 규정의 개정	이사 및 위원회 위원들이 준수해야할 중요원칙 수립 및 업무수행 적정성을 담보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의 실효성 강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iii)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하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또한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3조(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 여부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의 명확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i)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 주체

당사는 정관 제40조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에 관한 문서화된 기준, 절차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 정책 마련 및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i)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 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등을 부의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활동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리스크의 성격에 따라 각 사업부서, 재무, 법무, 정보보안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 리스크의 경우,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 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해외 매출에 의한 외화 수금이 원재료 수입에 의한 외화 지출보다 많은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환리스크 관리의 주 대상입니다. 당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위험 관리규정에 따른 외환 운용, 정기적인 환위험 관리위원회 개최,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 인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리스크 관리활동은 주로 자금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재무위험의 식별, 평가, 헷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 법인이 아니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준법교육, 점검 및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통한 임직원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ESG팀 산하 내부통제파트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당사의 경영진이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된 내용은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며, 대표이사는 평가된 내용 및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업무는 공시관리 규정에 따라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업무는 경영지원실 산하 IR/P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정보 수집, 공시서류 작성, 공시 실행, 연간 공시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 관련 법규 제/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의거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두고 있으며, 공시책임자는 당사 공시규정 제5조에 따라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담당책임자는 객근만 전무입니다.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

상기 기재된 내부통제정책이외에 추가적으로 윤리강령을 별도 지침으로 제정하여 전임직원 대상으로 윤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 회사의 자산 및 정보보호, 이해상충행위 금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전임직원은 본 강령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윤리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본 보고서 첨부 8. '솔루스첨단소재(주) 윤리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ESG팀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환경·안전·보건에 관련된 리스크를 EHS경영시스템(ISO14001&45001)을 통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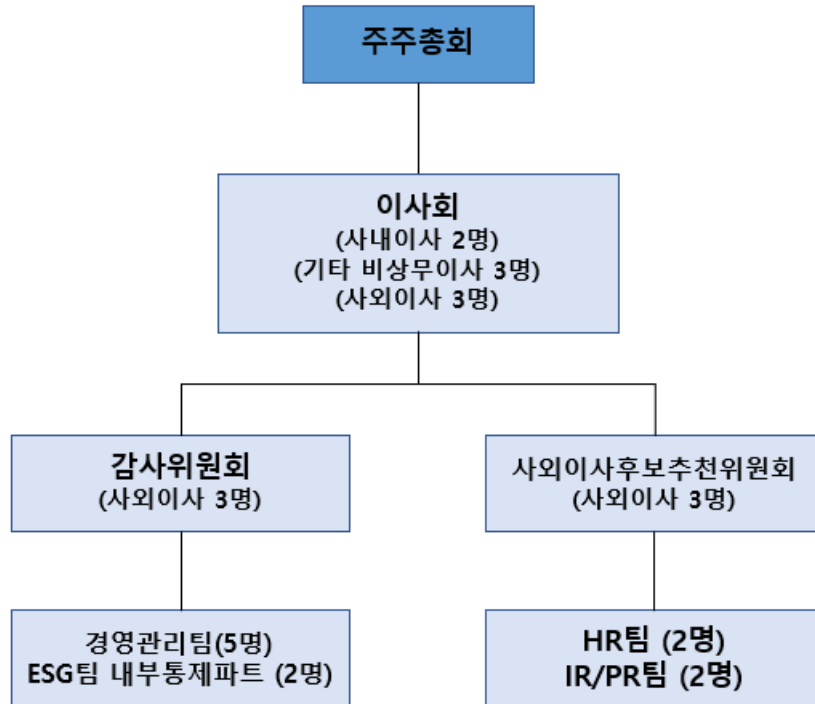
(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3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8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재무/회



계(황인이 이사), 에너지/소재분야 (최태현 사외이사) 및 금융분야(박상훈 사외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성격 및 역할에 따라 사내 유관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ii) 이사회 구성 현황

[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만 나이)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내 이사	진대제	남 (만 70세)	이사회 의장	2020.12.14	2023.12.14	기업경영 일반	전)삼성전자 대표이사 현)솔루스첨단소재 대 표이사
	서광벽	남 (만 68세)	이사	2021.03.26	2024.03.26		전)SK하이닉스 시스템 IC부문 사장 현)솔루스첨단소재 대 표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민현기	남 (만 58세)	이사	2020.12.14	2023.12.14		전)동양창업투자(주)이사 현)스카이레이크인베스 트먼트(주) 사장
	이상일	남 (만 50세)	이사	2020.12.14	2023.12.14		전)제네커인베스트먼트 (주)대표이사 현)스카이레이크인베스 트먼트(주)부사장



	김영민	남 (만 49세)	이사	2021.03.26	2024.03.26		전)우리투자증권(주)대리 현)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주)부사장
사외 이사	황인이	남 (만 50세)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2022.03.30	2025.03.30	재무/회계	전) Drexel Univ. 조교수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훈	남 (만 67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	2020.12.14	2023.12.14	금융	전)롯데카드 대표이사
	최태현	남 (만 58세)	감사위원회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2022.03.30	2025.03.30	에너지/ 소재	전)대통령비서실 민정 수석비서관 민원비서관 현)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iii)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표 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 위원회 (A)	위원장	사외이사	황인이	남	(B)	-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위원		박상훈							
	위원		최태현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B)	위원장		박상훈					(A)	-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점검/보완 -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 보 추천	-
	위원		황인이							
	위원		최태현							

(iv) 사외이사 관련 현황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3명으로 전체 이사회 구성원인 8명 대비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이사 총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중 황인이 사외이사만 1회 연임되었습니다.

(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등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선임(先任) 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 구성의 효율성과 독립성 등

당사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내부 조직을 충실히 구축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최상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 상법 제542조의8의 사



항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

(i)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사 선임에 성별, 연령, 직업군 등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 사전 검토를 통해 후보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등 자격과 자질에 관한 검증 후 주주총회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깊은 토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합니다. 당사는 현재 여성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향후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여성이사 선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ii) 공시대상기간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

[표4-②-1] 공시대상기간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선임 및 변동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재직여부
사내이사	진대제	2020.12.14	2023.12.14	2020.12.14	선임	재직
	서광벽	2021.03.26	2024.03.26	2021.03.26	선임	재직
	이윤석	2019.10.01	2022.10.01	2021.03.26	사임	퇴직
	서정호	2019.10.01	2022.10.01	2020.12.14	사임	퇴직
	곽근만	2019.10.01	2022.10.01	2021.03.10	사임	재직
기타비상무이사	민현기	2020.12.14	2023.12.14	2020.12.14	선임	재직
	이상일	2020.12.14	2023.12.14	2020.12.14	선임	재직
	김영민	2021.03.26	2021.03.26	2021.03.26	선임	재직
사외이사	황인이	2019.10.01	2025.03.30	2022.03.30	재선임	재직
	박상훈	2020.12.14	2023.12.14	2020.12.14	선임	재직
	최태현	2022.03.30	2025.03.30	2022.03.30	선임	재직
	정한익	2019.10.01	2022.10.01	2021.03.10	사임	퇴직
	선양국	2019.10.01	2022.10.01	2022.03.08	사임	퇴직

나. 이사회 구성원의 경쟁력 확보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전문분야 및 책임의식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사업경쟁력 제고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추천위원회 설치 여부 및 동 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및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상법 등 관련규정 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 적합도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며, 이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명	구성원명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선양국(위원장) 황인이 박상훈	2022.02.09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가결
	박상훈(위원장) 황인이 최태현	2022.04.21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선임	가결

나.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수준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후보 관련정보를 충분히,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하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최소 주주총회 2주전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4-③-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1.03.11 (주총15일전)	2021.03.26	기타비상무 이사	김영민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주된 직업, 세부경력,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사내이사	서광벽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의 확인서 및 서명	-



2022.03.08 (주총22일전)	2022.03.30	사외이사	황인이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주된 직업, 세부경력,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태현	-직무수행계획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의 확인서 및 서명	-

(ii)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의 정보제공 및 방법과 내용

당사 이사 후보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된 이사 중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 출석을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이사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집중투표제의 도입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주제안권자 조건: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 이상 보유 주주(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8항)

라.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상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소집공고를 이행함으로써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현황 (미등기 임원 포함) (기준일: 2022.05.30)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 (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진대제	남	대표이사 회장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총괄	
서광벽		대표이사 부회장		상근		
민현기		사장		비상근		
이상일		부사장				
김영민		부사장				
황인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최태현		사외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유럽통합법인 법인장
이하영		부사장				전자소재 사업총괄
김태형		전무				CFO
곽근만	전무	전지박영업 총괄				
이준욱	상무	전자소재영업				
박재용	상무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상법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및 사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사내조직 내 담당부서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기 관련 정책을 명문화시켜 놓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경영환경 고도화를 위한 상기에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 제정 및 기존 집행임원 인사규정 보완 등 관련 필요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등기임원은 상법과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되며, 상법 제382조 3항 및 제542조의8 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과하여 추천된 후보를 이사회에서 다시한번 결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등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

직무를 이용한 사적이익 도모 및 회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



우 징계의 사유가 되며,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 설립이후 현재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과거 횡령, 배임 등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의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환경 상 필요시 도입 필요성 및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이해관계

(i)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했는지 여부

[표 5-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했는지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황인이	해당사항 없음					
박상훈						
최태현	해당사항 없음				소송사건 위임 및 자문의 대가로 5.3억원 지급 (2019~2022년)	해당사항 없음

(ii)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최근 3개연도)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3인 사외이사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사외이사인 최태현 사외이사가 고문으로 재직중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소송사건 위임 및 자문을 받고 5.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해당기간: 2019~2022년), 그 이외의 사외이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iv)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 간의 이해관계 확인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당사는 상기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회사와 독립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추천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는 매년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통하여 회사 및 경영진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에서도 외부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의뢰 및 자문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검증 및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재직기간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하기의 표와 같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표 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황인이	2년 8개월	해당사항 없음		
박상훈	1년 6개월			
최태현	2개월			

다. 사외이사와 기업간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및 이해관계가 없는 자 선임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는지의 여부

당사는 당사와 사외이사 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사외이사 선임 시 법무/HR 등 관련부서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독립적인 법무법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사외이사 후보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를 별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마친 사외이사 후보만이 이사회에 추천되며 이사회의 추가 검증과 주주총회에서의 선임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심도 있는 검증 과정을 유지할 예정이며, 경영상 필요시 독립적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외이사와 기업간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 회사의 이사, 감사직 등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기준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현황

[표 5-②-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황인이 (감사위원)	2019.10.01	2025.03.30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	2개월	상장기업 (유가증권)
박상훈 (감사위원)	2020.12.14	2023.12.14	-	해당사항 없음			
최태현 (감사위원)	2022.03.30	2025.03.30		오비맥주	감사	1년1개월	비상장사

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지의 여부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의사결정 참여 및 업무집행 감시 등 사외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의안의 내용 및 세부사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운영현황
(i)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i)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명문화하여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관리팀장을 간사로하여 이사회 사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간사를 포함한 2명의(IR 및 이사회 지원 담당)직원이 이사회 업무 수행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HR팀, 경영관리팀 및 ESG팀 내부통제파트 등 각 부서가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운영과 사외이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중요한 업무 관련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 요청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ii)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회의 개최 여부와 내역(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 제외)

2021년 1월 1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회의 개



최를 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혹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만의 회의 및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표 5-③-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전체 사외이사	회의사항	비고
-	-	-	-	-	-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정보 및 경영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사회 간사를 포함한 유관부서 직원들이 이사회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의 사외이사만의 회의 또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i)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각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 내역은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개별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은 회사와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를 통한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 등에 별도로 반영하거나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부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여 평가실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i) 구체적 평가방법 및 규정 등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개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바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

(i)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 내용 및 수립 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기준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



성 제고를 위해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년 사외이사 보수는 총 年216백만원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年 54백만원입니다. (정한익(前)사외이사 퇴임분 포함, 2021.03.10 퇴임) 본 보수는 활동에 필요한 수행비, 교통비, 회의참석비용, 기여도, 법적책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의 이사 보수 한도 및 집행결과는 하기표와 같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및 집행결과 (기준일: 2021.01.01~2021.12.31)

기간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제3기 (2021.01.01~2021.12.31)	이사 보수 한도액	5,000	주주총회 기 승인
	이사 보수 실집행액	1,586	-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수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외이사 보수의 적정성

상기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개별 평가 요소(공식적 개별 평가 미 실시)를 연동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도입의 장단점 및 결과 활용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i) 정기 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

당사 정관 제43조 제4항 및 이사회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매3월에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는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않는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합니다.

(ii)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내역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및 안건통지일자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 7-①-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021-1	보고	1. '20년 경영실적 및 '21년 경영계획 보고	보고	정기	2021.02.08	2021.02.05	9/9
	결의	1. 제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2021-2	보고	1.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감사보고	보고	정기	2021.03.11	2021.03.10	7/7
	결의	1. 제2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가결				
2021-3	결의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1.03.26	2021.03.25	6/8
2021-4	보고	1. '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1.04.22	2021.04.21	8/8
2021-5	보고	1. '21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1.07.21	2021.07.20	6/8
	결의	1.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3.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2021-6	결의	1. 분할보고총회 갈음 공고의 건 2.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가결	임시	2021.10.01	2021.09.30	8/8
2021-7	보고	1. '21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1.10.28	2021.10.27	6/8
2021-8	결의	1.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3. VESH 에 대한 모회사 보증 제공의 건 4. 솔루스바이오텍(주)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12.09	2021.12.08	7/8
2021-9	결의	1. VESH에 대한 모회사 보증 제공의 건	가결	임시	2021.12.21	2021.12.20	5/8
2022-1	결의	1. 등기 경정 신청의 건	가결	임시	2022.01.20	2022.01.19	8/8
2022-2	보고	1. '21년 경영실적 및 '22년 경영계획 보고	보고	정기	2022.02.09	2022.02.08	8/8
	결의	1. 제 3 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2. 전자투표 채택의 건 3. VESH에 대한 모회사 보증 제공의 건	가결				
2022-3	결의	1. 유상증자 승인의 건 2. 단기차입(브릿지론)승인의 건 3. VES 에 대한 모회사 금전 대여의 건 4. 담보제공 수수료 약정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2.02.28	2022.02.25	8/8
2022-4	보고	1.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및 감사보고	보고	정기	2022.03.08	2022.03.07	7/8
	결의	1. 제 3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 2. 주주총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2022-5	보고	1. '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2.04.21	2022.04.20	7/8
	결의	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iii)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등의 현황

이사회는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의장이 소집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 직전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구두, 전화,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규정에 맞게 모든 이사회 개최 시 개최 직전일까지 사전 소집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이사회 정기적 개최 여부, 이사회 운영 규정 마련 여부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추가적으로 필요시 임시 이사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 및 보존 여부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3 및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록에 이사회 의 내용 및 결의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개로 이사회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향후 녹취록 작성 계획은 없습니다.

나. 이사 별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안건 찬성률

이사회 결의는 세부원칙 7-①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기/반기/사업보고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여부 및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 (찬성/반대) 행사내역을 공시하여 투명한 이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 별 이사회 출석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 7-②-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기준일: 2021.01.01~2021.12.31)

구분	회차	1	2	3	4	5	6	7	8	9	비고
	개최일	2021.02.08	2021.03.11	2021.03.26	2021.04.22	2021.07.21	2021.10.01	2021.10.28	2021.12.09	2021.12.21	
사내이사	진대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
	서광벽	해당사항 없음		불참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03.26 신규선임



	곽근만	출석	해당사항 없음							2021.03.10 사임
	이윤석	출석	출석	해당사항 없음						2021.03.26 사임
사 외 이 사	황인이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불참
	선양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박상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정한익	출석	해당사항 없음							2021.03.10 사임
기 타 비 상 무 이 사	민현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불참
	이상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영민	해당사항 없음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기준일: 2022.01.01~2022.05.30)

구 분	회차	1	2	3	4	5	비고
	개최일	2022.01.20	2022.02.09	2022.02.28	2022.03.08	2022.04.21	
사 내 이 사	진대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
	서광벽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사 외 이 사	황인이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선양국	출석	출석	출석	불참	해당사항 없음	2022.03.08 사임
	박상훈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최태현	해당사항 없음				출석	2022.03.30 신규선임



기 타 비 상 무 이 사	민현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상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김영민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사 별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하기와 같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나,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 7-②-2]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¹⁾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황인이	사외 이사	2019.10.01 ~ 현재	92.6	7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한익		2019.10.01 ~ 2021.03.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선양국		2019.10.01 ~ 2022.03.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박상훈		2020.12.14 ~ 현재	88.9	77.8	100.0	-	100.0	100.0	100.0	-
최태현		2022.03.30 ~ 현재	100.0	100.0	-	-	100.0	100.0	-	-
진대제	사내 이사	2020.12.14 ~ 현재	94.4	88.9	100.0	-	100.0	100.0	100.0	-
서광벽		2021.03.26 ~ 현재	77.8	77.8	-	-	100.0	100.0	-	-



곽근만		2019.10.01 ~ 2021.03.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윤석		2019.10.01 ~ 2021.03.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현기		2020.12.14 ~ 현재	88.9	77.8	100.0	-	100.0	100.0	100.0	-
이상일	기타 비상무 이사	2020.12.14 ~ 현재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김영민		2021.03.26 ~ 현재	85.7	85.7	-	-	100.0	100.0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및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역할에 대해서는 전술한 본 보고서 내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 11, 제415조의2에서 사외이사가 위원의 2/3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관련 법규정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차원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은 전술한 본 보고서 내 '[표 4-①-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 내용

(i) 위원회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 임면 등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각 규정을 제정,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연도부터 보고서 제출일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2021년도 반기검토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구축 결과 보고, 감사인 사후평가, 감사인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대하여 심의 및 결의하는 등의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상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의 활동, 구성, 자격, 임면 등에 관한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은 본 보고서 첨부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공시대상기간연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이 심의 및 결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구성, 자격, 임면 등에 관한 내용은 본 보고서 첨부자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회 결의사항 이사회 보고 여부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회에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회의 상정 안건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 각 위원회 별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

[표8-②-1]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기준일: 2021.01.01~2022.05.30)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전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차	2022.02.09	3/3	결의 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 차	2022.04.21	3/3	결의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	-----	----------	--------------------------	----

[표8-②-1] ② 최근 3개 사업연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¹⁾		
			2021 (최근년도)	2020	2019
사외 이사	황인이	100.0	100.0	100.0	100.0
	선양국	100.0	100.0	100.0	100.0
	정한익	100.0	-	100.0	100.0
	박상훈	100.0	100.0	100.0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감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 및 출석률은 [표 9-②-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i) 내부감사기구 구성, 선임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총 위원의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그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황인이 감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황인이 이사입니다. 황인이 이사는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경영학(회계전공) 박사를 취득한 뒤 2013년부터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회계학 부교수로 재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 관련 경력 및 자격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표 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황인이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University of Texas 경영학 박사(회계전공) 전) Minnesota State University 조교수 전) Drexel University 조교수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회계학)	회계·재무 전문가 (2022.03 재선임)
위원		박상훈	전) 롯데카드 대표이사 전) 롯데카드 고문 전) 대흥기획 고문	
위원		최태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원비서관 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ii)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로 구성되어 그 구성원이 전원 사외이사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를 추천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정하며, 상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라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기준의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3명)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충족(전원 사외이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황인이 1인)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황인이 사외이사)	
그 밖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i) 감사위원회 규정 존재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확인하는 등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6) 외부감사인 선정
-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해당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9) 내부통제시스템의평가
- (10) 법령 및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 이력은 없으나, 공시대상기간 이전인 2020년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공시대상기간 이전인 2020년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감사위원 참석현황	주요 교육내용
2020.07.23	전략팀장	전원 참석	솔루스첨단소재 사업소개

공시대상기간에 별도로 대면 또는 화상교육 실시 이력은 없으나, 향후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검토 및 운영 예정입니다.

(iii)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iv)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당사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ESG팀 산하 내부통제파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파트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현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내부통제파트	3	과/부장(평균 11개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그 밖의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련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내부통제파트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당사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서 직접 감사를 수행합니다.

(v) 내부감사기구의 경영정보 접근성 정도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 보수 정책

(i) 보수정책 운영 현황 및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등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간의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인 바, 전술한 세부원칙 '6-②-가. 사외이사의 보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위원으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수행비, 교통비, 회의 참석비용, 기여도, 법적책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사의 규정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 내역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당사 감사위원회 회의는 반기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또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있으며, 상정 예정 안건을 포함하여 소집 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대면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결의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상세한 감사활동 내역은 하기의 [표9-②-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2024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2022년 사업연도 개시 전에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한영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고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게시일: 2021년 12월 28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회의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2년 3월 8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으며, 동일자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의 회의 개최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출석률 등은 하기 [표 9-②-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출석률 등

[표 9-②-1]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기준일: 2021.01.01~2022.05.30)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21-1	2021.02.08	4/4	보고	2020년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보고
2021-2	2021.03.11	3/3	보고	2020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결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가결
2021-3	2021.07.21	2/3	보고	2021년 반기검토결과 보고	보고
2021-4	2021.10.28	2/3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구축결과 보고	보고
			결의	감사인 사후평가	가결
2021-5	2021.12.09	3/3	결의	감사인 선임	가결
2022-1	2022.02.09	3/3	보고	2021년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보고
2022-2	2022.03.08	2/3	보고	2021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결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	가결
2022-3	2022.04.21	3/3	결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결의	감사인 사후평가	가결



[표 9-②-1] ②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기준일: 2021.01.01~2022.05.30)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개최일	2021.02.08	2021.03.11	2021.07.21	2021.10.28	2021.12.09	
사외 이사	황인이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
	정한익	출석	해당사항 없음				2021.03.10 사임
	선양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2.03.08 사임
	박상훈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비고
	개최일	2022.02.09	2022.03.08	2022.04.21	
사외 이사	황인이	출석	출석	출석	-
	선양국	출석	불참	해당사항 없음	2022.03.08 사임
	박상훈	출석	출석	출석	-
	최태현	해당사항 없음		출석	2022.03.30 선임

[표 9-②-1] ③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비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사외 이사	황인이	93.3	80.0	100.0	100.0	-
	박상훈	80.0	80.0	-	-	2020.12.14 선임
	최태현	-	-	-	-	2022.03.30 선임
	선양국	100.0	100.0	100.0	100.0	2022.03.08 사임
	정한익	100.0	100.0	100.0	100.0	2021.03.10 사임

(iii) 감사절차, 회의록, 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대한 내부규정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본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매 감사위원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3조에 의거하여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상기 기술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그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관련 기준 및 절차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에 목적을 둔 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인 선임 규정 및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의 선임시 감사경험, 회계법인의 규모 등 외부역량과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감사서비스 품질, 감사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사후평가를 통하여 감사 방법론의 적정성, 내부감사와의 협력정도, 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감사위원회는 한영회계법인을 2022년~2024년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ii)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련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iii)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

당사는 2021년 12월 9일 차기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해당 회의에서 외부감사인의 자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임 가능 외부감사인을 선정한 뒤, 보수,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감사용역 체결 내용, 감사계약내역(보수, 시간) 및 실제 수행내역(보수, 시간) 등을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iv)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여부 및 내용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담당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관련 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세밀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에 따라 당사의 주주총회에 공인회계사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v) 외부감사인이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당사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의 비감사 자문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2021년도	2021.06.30	이전가격정책수립	2021.06~2021.10	32백만원	-
2020년도	-	-	-	-	-
2019년도	-	-	-	-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상기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

(i)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사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 협의 여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협의내용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검토 결과 또는 연도 감사결과 및 감사 수행 계획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의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02.08	회사측: 감사위원 4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대면 회의	2020년 기말감사 결과, 핵심감사 사항에 대한 수행 감사절차 등
2	2021.07.21	회사측: 감사위원 2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반기검토결과, 2021년 감사 수행 일정 및 핵심감사사항 선정협의 등

감사위원회는 2021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협의내용은 2020년 기말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수행 감사절차, 반기검토결과, 2021년 감사 수행



일정 및 핵심감사사항 선정협의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회의를 통해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iii) 외부감사인인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며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iv) (별도)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 명 및 제출시기

당사는 제3기(2021년)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를 2022년 1월 21일에,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2월 10일에 당사의 외부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기주주총회 기준 별도 6주전, 연결 4주 전인 법적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향후 계획

당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기별 1회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됩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기별 1회 이상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의사소통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회의 빈도를 점차 늘리고,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주기적 의사소통을 준수하기 위한 관련 제반 업무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 기타 주요 사항

● 윤리강령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이하 '솔루스' 또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솔루스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윤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회사의 모든 영역, 모든 사업 의사결정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윤리경영 원칙은 정직과 투명성, 열린 마음과 존중 그리고 책임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 윤리강령

<https://www.solusadvancedmaterials.com/kr/intro/code-of-conduct/>

참고로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적인 제재를 부과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내부 규정은 하기와 같이 첨부합니다.

- ✓ 첨부 1. 정관
- ✓ 첨부 2. 이사회 규정
- ✓ 첨부 3. 감사위원회 규정
- ✓ 첨부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 첨부 5. 내부회계관리 규정
- ✓ 첨부 6. 공시관리 규정
- ✓ 첨부 7. 감사인 선임 규정
- ✓ 첨부 8. 윤리강령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설명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		비고
		O	X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V	주총 22일전 실시(약 3주전 실시)	-	-	세부원칙 1-① 참고
	② 전자투표 실시*	V		전자투표 실시	-	-	세부원칙 1-② 참고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V	집중일 개최 (2022.03.30 개최)	-	-	세부원칙 1-② 참고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V	배당정책 미통지	-	-	세부원칙 1-④ 참고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정책 마련 및 운영 검토 예정	-	-	세부원칙 3-② 참고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준법경영관련 성문자료 미비 (정책 검토 예정)	-	-	세부원칙 3-③ 참고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겸임	-	-	세부원칙 4-① 참고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미채택 (도입 검토 예정)	-	-	세부원칙 4-③ 참고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성문자료 미비 (기존 집행임원 인사 규정 등 보완 검토 예정)	-	-	세부원칙 4-④ 참고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없음	-	-	세부원칙 5-① 참고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V	2021년 사업연도 교육 미 제공 (교육프로그램 검토 예정)	-	-	세부원칙 9-① 참고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 (ESG팀 내부통제파트) 존재	-	-	세부원칙 9-① 참고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V		황인이 사외이사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석사학위이상 취득, 대학 조교수 이상 5년이상 재임)	-	-	세부원칙 9-① 참고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분기별 미실시 (반기별 1회 실시)	-	-	세부원칙 10-② 참고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감사위원회 규정 존재	-	-	세부원칙 9-① 참고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최초로 공시하는 기업으로,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